

의안번호	제 6 호
의 결 년 월 일	2006년 8월 1일 【 제 171 회 】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음 성 군 수
제출년월일	2006년 7월 27일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
----------	---

제출년월일 : 2006. 7. 29

제 출 자 : 음성군수

1. 안건명

-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대소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3명을 문화공보과에 배치하고, 무보험 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사건송치 등의 신규업무 증가에 따라 1명을 공업경제과에 배치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인력 9명 중 한시정원으로 자연 감축되는 4명을 자체정원으로 재배치 하고,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사육등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7명을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배치하고자 함

3. 개정주요골자 : 15명 중 (627명 ⇒ 642명)

- 본 청 : 4명 중 (문화공보과 3명, 공업경제과 1명)
 - 일반직 6급 : 1명, 8급 : 2명, 9급 : 1명
- 사업소 : 11명 중(공영개발사업팀 4명,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7명)
 - 일반직 6급 : 1명, 7급 : 6명, 8급 : 3명
 - 기능직 9급 : 1명

4. 조례개정안 : 별지붙임

5. 신 · 구 조문대비표 : 별지붙임

6. 조례개정근거법령 및 공문

- 음성군 정원 승인(도 자치행정과 - 4906 (2006. 5. 3))

7. 예산사항 : 597,597천원

8. 입법예고 : 2006. 6. 7. ~ 6.26, 2006. 6.21.~7.10

- 입법예고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
 - 공영개발사업소 정원 감축시 공영개발사업 추진 지남

9. 제안자 의견

- 공영개발사업소는 5급 소장을 6급 팀장으로 변경하지만, 정원은 증감 없이 9명을 배치하고, 대소도서관 및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관리, 무보험 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등의 신규업무 증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42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수 : 63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지와 같으며,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의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627</u>이며, 다 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수 : <u>615</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2명</u>	제2조(정원의 총수)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642명</u>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수 : <u>630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2명</u>

[별표3]

음성군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총정원		627	306	12	105	43	161	642	310	12	105	54	161
일 반 직	소계	486	263	6	50	22	145	500	267	6	50	32	145
	6급	119	70	1	5	7	36	121	71	1	5	8	36
	7급	148	92	3	8	6	39	154	92	3	8	12	39
	8급	116	62		18	7	29	121	64		18	10	29
	9급	75	25		17	1	32	76	26		17	1	32
기 능 직	소계	93	41	6	9	21	16	94	41	6	9	22	16
	9급	23	9	3	1	6	4	24	9	3	1	7	4

의견

음성군의 공공기관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음성군 공고 제 2006-659호에 따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의부 개정규칙의 입법예고 사항을 개편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성군의 공공기관 사업소는 지역에서 유망 무이한 사업분야를
가양한 손익없는 사업분야에서 존속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원 감축조정은 심히 부담됩니다.
2. 불가피한 관계 규정으로 감축조정이 된다면 향후 정상적인
사업추진과 운영에 막대한 지장의 초래될것을 우려합니다.
3. 과거부터 현재까지 실무에 참여했던 관계 공무원은 이등이나
하위를 해서는 정해로 알릴것입니다 (현재보다 더 처지가 됩니다)
4. 중앙부처의 인력을 현상대로 이등에 맞추기 위하여 높은 인사와
배려가 필요 할것입니다.
5.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업이나 향후 계획된 사업 모두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가급히 노력해야 할 5.3 지방선거 공약을 실현
할수 있을것으로 믿습니다.
6. 중앙부처와 끊임없이 협의 하에 원상회복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06. 7. 3

음성군민회 408-1 김소정 드림
[인]